

■ 최신 법령 ■

[자본시장]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

채희석 변호사

정부는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“역동적인 혁신경제” 달성을 위한 주요 세부실행과제의 하나로 지난 2014년 3월 6일 「M&A 활성화 방안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「M&A 활성화 방안」의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안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
현재까지 발표된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4월 24일 발표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고,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이미 Legal Update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법률 개정안 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'발행·공시규정')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아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발행·공시규정의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.

1. 개정 이유

「M&A 활성화 방안」 및 「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」에 포함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」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.

2. 주요 내용**가. 상장예정법인의 반기감사보고서·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 완화**

증권의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반기감사보고서·반기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, 반기보고서 제출기일(반기 종료 후 45일)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반기감사보고서·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이전 분기보고서로 대체됩니다.

나.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매각 시 공개매수의무 면제

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, 해당 주식의 매각 시 매수자의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됩니다.

3. 다운로드 : 「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관련 규정 입법예고(지평 Legal Update)」,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」